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179,150,349	5,374,510
일반회계		156,266,751	4,688,003
특별회계		22,883,598	686,508
	기타특별회계	22,883,598	686,508
	의료급여기금	408,788	12,264
	주거환경개선사업	512,976	15,389
	주차장	21,660,711	649,821
	지하수관리	266,219	7,987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34,904	1,04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809,77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금회 추경외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교부되는 국·시비보조금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